

● 문답식 상품해설 (Q & A)

Q) 이 상품에 가입하면 받을 수 있는 보장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무배당 삼성화재 상해보험 행복한 안심파트너(2404.9)는 상해, 운전자, 비용손해, 재산손해 및 배상책임 등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Q) 상해, 교통상해, 운전중 상해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세가지 담보의 보장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해 > 교통상해 > 운전중상해

[상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합니다.

[교통상해]

「운전중 상해 + 탑승중 상해 + 보행중 상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운전중상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생긴 상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Q) 한방치료를 보장하는 특별약관은 어떤것이 있나요?

A) 한방치료를 보장하는 특별약관은 아래와 같이 2가지가 있으며, 각각 「첩약 한방치료비」, 「약침 한방치료비」 및 「특정한방물리요법 한방치료비」 총 3 개의 세부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자동차사고 부상(1~6급) 한방치료비(운전자용)
- 자동차사고 부상(1~6급) 한방치료비(비운전자용)

▷ 한방치료비 세부보장별 지급보험금 횟수

- 절약 한방치료비

지급보험금	가입금액	가입금액	가입금액	X
절약 횟수	1회 (1~20첩)	→ 2회 (21~40첩)	→ 3회 (41첩이상)	→ 4회이상

- 약침 한방치료비
- 특정한방물리요법 한방치료비

지급보험금	① 약침 한방치료비	가입금액	가입금액	가입금액	가입금액	가입금액	X
	② 특정한방 물리요법 한방치료비	가입금액	가입금액	가입금액	가입금액	가입금액	X
치료 횟수		1회 → 2회 → 3회 → 4회 → 5회 → 6회이상					

Q) 도난손해 특별약관은 명기가재와 일반가재로 나뉘는데 명기가재와 일반가재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A) 명기가재는 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만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의 목적을 말하며 명기가재에 해당하는 보험의 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귀금속, 귀중품(무게나 부피가 휴대할 수 있으며 점당 300만원이상), 보옥, 보석, 글·그림, 골동품, 조각물 및 이와 비슷한 것
단,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상품인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2.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 목형, 소프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

일반가재는 위에서 정한 명기가재 이외의 보험의 목적을 말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Q) 급배수누출손해(자기부담금 10%) 특별약관은 무엇이고 운영은 어떻게 되나요?

A-1) 급배수누출손해(자기부담금10%) 특별약관은 보험의 목적이 급배수시설의 누수 또는 방수로 입은 직접손해의 90%를 보상합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급배수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험의 목적의 구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

단, 스프링클러 설비나 장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A-2) 급배수누출손해(자기부담금10%) 특별약관의 면책기간은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며 약관에서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한 물건들(귀금속, 귀중품이나 손해를 발생시킨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 자체 등)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Q) 이 상품의 보장 중 면책기간이 있는 보장이 있나요?

A) 네. 있습니다. 이 상품의 보장 중 최초 보험가입 또는 부활(효력회복) 후 일정기간 보장하지 않는 기간(면책기간)이 있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보장명	최초 보험가입 또는 부활(효력회복) 후 면책기간
급배수시설누출손해(자기부담금10%)	90일
6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60일
12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60일
20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60일
(신)8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60일
7대문화용품 고장수리비용	60일
차량유리 교체비용지원금(개인자가용,연간1회한)	30일

Q) 계약내용이 다른 법률과 연계되어 보험금 지급사유가 회사의 자체적인 기준이 아닌 계약의 경우 관련 법률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나요?

A -1) 네. 있습니다. 계약내용이 다른 법률과 보험금 지급사유가 연계되는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회사의 자체적인 기준이 아님에 따라 관련 법률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기존 계약내용에 상응하는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① 관련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라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 ② 관련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라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 ③ 관련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라 계약유지 필요가 없어지는 경우
- ④ ① 내지 ③ 이외의 법률의 개정 등에 따라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칠 수가 있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명령이 있는 경우
- ⑤ 기타 금융위원회 등의 명령이 있는 경우

A-2) 계약자가 계약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거나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내용 변경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A-3) 회사는 계약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지체없이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취)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계약내용 변경절차 등 계약자에게 알립니다.

Q) 이 상품의 만기환급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A) 회사는 이 보험의 기본계약 만기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만기환급금으로 지급하며, 공시이율의 변경,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실제 납입일자, 중도인출 여부 등에 따라 실제 만기환급금은 최초 가입 시 예시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납입보험료 중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제외한 금액)를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향후 공시이율의 변경,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실제 납입일자, 중도인출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